충청남도 공고 제2021-815호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1.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연장·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1. 5. 2.

충청남도지사

1 처분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호

- (벌칙) 동법 제80조, 제83조

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2 처분 사항

□ (처분대상)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※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□ (처분내용)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치

※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(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)

□ 다중이용시설 관리 (수칙 요약표)

❶ **(중점관리시설)**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**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**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유흥시설 5종, 홀덤펍	▸ **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** ▸ **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▸ **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** ▸ **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**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 **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▸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▸ **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** 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
실내 스탠딩공연장	▸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식당·카페 **(무인카페 포함)**	▸ **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** ▸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▸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파티룸	▸ **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** ▸ **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**

❷ **(일반관리시설)**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(상점·마트·백화점 제외)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의 **기본 수칙 의무화**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실내 체육시설 **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**	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**(독서실 제외)** **직업훈련기관**	▸ **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 **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**
영화관	▸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▸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▸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음식 섭취 금지('ㄷ'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독서실, 스터디카페	▸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**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**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놀이공원, 워터파크	▸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▸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백화점·대형마트	▸ **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** ▸ 마스크 착용 ▸ 주기적 환기·소독
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(300㎡ 이상)	▸ 마스크 착용 ▸ 주기적 환기·소독

❸ **(기타시설)**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의 **기본 수칙 의무화**, 시설별 특성에 따라 **이용인원·시간 등 제한**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숙박시설	▸ **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** ▸ **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** ▸ **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** ▸ **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**
전시회장·박람회장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장	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국공립시설	▸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▸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▸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감염취약 위험시설 (요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등)	▸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(칸막이 설치,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) * 사전예약제, 면회인원 제한,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▸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(기록) ▸ **종사자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**

□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▸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▸마스크 착용
사적 모임	**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**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**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**
기타 모임·행사	**▸모임·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** - 설명회,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(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) 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교실)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(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) ▴**(행사)** 설명회, 공청회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숍 등 ▴**(각종 시험)**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 **▸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*, 축제,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** 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**▸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(4㎡당 1명), 모임·행사 인원제한(499인까지 가능) 미적용**

기타 모임·행사	▸ **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** 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 ▸ **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** -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,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ex) 실내외 사설 풋살장, 축구장, 야구장 등에서 경기개최하는 경우 - 다만,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
스포츠 관람	▸ 3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▸ 밀집도 2/3 준수
종교활동	▸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▸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▸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
3 기타 사항

1. 처분사유 :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·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
2. **처분기간 : 2021. 5. 3.(월) 00시 ~ 2021. 5. 23.(일) 24시 까지**

   *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, 완화된 조치는 불가

3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5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,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참고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**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 -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※ 콜라텍(무도장)은 방역수칙 준수하며, 춤추기(무도) 가능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 -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이용 금지), 테이블·룸 간 이동 금지
▲ **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▲ **노래연습장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 **실내스탠딩 공연장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 **파티룸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 8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개별 방 면적 8㎡당 1명)
▲ **식당·카페**	
★ **추가 적용 수칙**	
없음	

참고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**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**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목욕장업**을 제외하고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로 아래 '수칙 추가 적용 수칙'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돌잔치전문점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
▲영화관, ▲공연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○(이용자) 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▲PC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○(이용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
▲오락실·멀티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
▲실내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스포츠경기(관람)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'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
▲실외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▲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
▲독서실·스터디카페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○(이용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
▲유원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○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
▲이·미용업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▲대형마트·백화점, ▲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
□ 목욕장업(수도권 외 지역)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 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*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▸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▸ 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 * 다만,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▸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▸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, 음료컵은 사용금지 ▸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 ▸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▸ 방역관리자 지정 ▸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▸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▸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*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▸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▸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▸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* 평상, 음료컵은 사용금지 ▸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▸ 마스크 착용 ▸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섭취 금지 ▸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
참고3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(대상)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
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

○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숙박시설 전체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	○ (이용자) - 숙박시설 주관 행사·파티 참여금지 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금지

참고4 지역 집합 · 모임 · 행사 대상 의무화 조치

□ 집합·모임·행사

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**합의·약속·공지**된 **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시간대**, **동일한 장소**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**인 **집합·모임활동 금지**
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**친목형성**을 **목적**으로 하는 **모든 모임·행사**

  * **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**

- (인원산정) '5명의 범위'에는 **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** 등은 제외

- '사적모임'은 영유아*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
  *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※ 적용 예외

❶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**가족구성원 등**이 모이는 경우

- **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**
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**결혼을 위한 상견례**로 모이는 경우

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
- **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*이 필요한 경우
- **임종 가능성**이 있어 **가족** 등이 모이는 경우

❷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▸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②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*, 학술행사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**

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

○ **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**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***, **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**를 **개최**하는 경우 해당 **장소·시설**에서 다음과 같은 **방역지침 준수**

*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는 별도 마련된 기본방역수칙을 따름

<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▸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

참고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수 기준 **30%**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**30%**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**30명** 이내 참여 가능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**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.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○(이용자) - 좌석 수 기준 **30%**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**30%**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**30명** 이내 참여 가능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**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** ※ 특히, **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** 등에서는 **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** 외에 **모든 모임.행사(숙박포함) 참석** 및 **음식 섭취 금지**

참고6 기타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로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▲카지노, ▲경륜·경마·경마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	○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 제한 준수
▲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국제회의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
▲미술관·박물관, ▲도서관, ▲키즈카페, ▲마시지업소·안마소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
참고7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**콜센터, 물류센터**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**을 적용하되 **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**

<추가 적용 수칙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▲ 콜센터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
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
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td><td>○ (이용자)
- 방역수칙 준수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▲ 물류센터</td></tr>
<tr><td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td><td>○ (이용자)
- 방역수칙 준수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td></tr>
</table>

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

참고8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조치

○ **(대상)**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**운송수단**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이용자 수칙
▸ 마스크 착용

참고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

□ **(대상)**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□ **(적용기간)** 2021. 4.12.(월) 0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□ **(방역수칙)** 실내*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(야외)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

*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/ ※ 엘리베이터 포함

① (중점관리시설) 종사자 · 이용자

❶ 클럽 등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감성주점 ❹ 헌팅포차 ❺ 콜라텍 ❻ 노래연습장 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❽ 실내 스탠딩공연장 ❾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
② (일반관리시설) 해당 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, 종사자, 이용자

❶ 공연장 ❷ 영화관 ❸ 실내체육시설 ❹ 학원(교습소 포함) ❺ 직업훈련기관 ❻ PC방 ❼ 오락실·멀티방 ❽ 목욕장업 ❾ 결혼식장 ❿ 장례식장 ⓫ 이·미용업 ⓬ 워터파크·놀이공원 ⓭ 독서실·스터디카페 ⓮ 상점·마트·백화점

③ (실내 스포츠 경기장) 종사자 · 이용자

④ (의료기관 · 약국) 의료기관 · 약국의 종사자 · 이용자

⑤ (노인요양시설, 주 · 야간보호시설) 입소자 ·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⑥ (고위험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종사자 · 이용자

⑦ (종교시설) 관리자 · 운영자 · 이용자

⑧ 기타 기본방역수칙에 포함 된 실내 시설

※ 단,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함.

□ (실외) ①,②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① 집회 · 공연 · 행사 ·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

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

□ 허가된 마스크(❶항)로 착용법(❷항)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

❶ (마스크 종류)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립뷰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❷ (착용법)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

❸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예외자	• **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** • **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**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**의학적 소견**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	• 음식·음료를 **먹거나 마실 때**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**물속·탕 안에 있을 때** • 세수, 양치 등 **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**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**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**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**공연**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**방송 출연**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**및 사진 촬영**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**수어통역을 할 때** • **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** • **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** • 본인 확인을 위한 **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**

❹ **단속방법**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과태료 부과(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)

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❺ **과태료**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